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규약

제1조 이 운동의 명칭은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이라 칭한다.

제2조 이 운동의 목적은 모든 가정의 성화와 행복과 복지를 조장함에 있다.

제3조 이 운동의 수호자로 「나자렛의 성가정」을 받든다.

제4조 이 운동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으로 설립되어 각 교구에는 교구장이 설치할 수 있다. 이 운동을 교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당 조직과 공소조직을 계통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본당과 공소조직은 본당 신부가 한다. 또한 이와같은 조건하에 각 기관(가톨릭병원, 의원, 기타기관)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는 본당 신부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장이 조직할 수 있다.

제5조 이 운동의 회원은 이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정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으로 한다. 가입절차는 가정의 양부모(편부모 포함)가 신청하고 본당 신부나 기관장 혹은 그 대리인이 등록을 결정한다.

(2) 준회원은 성직자, 수도자, 미혼자 그리고 기혼자로서 정회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정회원이 될 수 없는자로 하고 본당 신부나 기관장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다.

제6조 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행복한 가정운동 본당센터(공소, 기관센터)

(2) 행복한 가정운동 교구위원회

(3) 행복한 가정 전국협의회

본당(공소, 기관)센터

제7조 본당(공소, 기관)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영신지도자—성직자, 수도자 중에서 본당 신부가 임명

(4) 회장, 서기(회계)—본당 신부가 임명

(5) 가정생활 및 가족계획상담 지도원—가능한 한 두명 본당과 공소센터는 본당 신부가 임명하고 각 기관센터는 본당 신부의 동의 를 얻어 해당 기관장이 임명한다.

제8조 이 운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은 주로 본당, 공소, 기관센터에서 수행된다. 그러므로 각 센터에서는 가정도덕 즉 부부의 사랑과 존경, 부부의 신의와 화목,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자녀들의 영신적, 도덕적, 세속적 교육과 가정에서의 기도생활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혼인과 가정생활에 은총과 축복이 깃들도록 주력해야 하고 가족계획을 권장 지도한다.

제9조 각 센터의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한달에 한번 정한 날에 미사를 드린다. 이 미사에는 회원들이 각자의 가정을 위해 모두 참여하도록 권한다.

제10조 정회원을 위해 한달에 한번 정한 날에 회합을 갖는다. 단, 소요시간은 30분이상 1시간 이내로 하고, 준회원도 이 회합에 참석할 수 있다.

이 회합은 영신지도자나 가정상담지도자가 주도하는 교양시간으로 단체토론, 성경낭독, 신심공부 혹은 이와 결부된 것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다.

제11조 준회원중의 미혼자들은 적어도 년 2회의 회합을 갖고 전향과 같은 예결에 관한 것을 지도 받는다. 회원 아닌 미혼자들도 이 회합에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 정회원은 년 600원 이상 2,000원 미만의 회비를 헌납하고 준회원은 년 3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회비를 헌납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지방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 회비는 본당, 공소, 기관센터의 행복한 가정운동에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을 일년에 한번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가정생활 및 가족계획 상담지도 경비도 지방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별도로 헌납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 각 본당과 공소에서 회합이나 회원등록 부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 규약을 본으로 하여 본당 신부의 승인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기타기관에서는 본당신부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규정할 수 있다.

교구위원회

제15조 교구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한다.

- (1) 교구장이 임명한 지도신부
- (2) " 사무국장
- (3) 교구 지도신부가 각 본당과 기관센터에서 선발한 적어도 3명의 회원
- (4) 신학, 사목, 교리교육, 일반교육, 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교구 지도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촉된 자

제16조 교구 위원회의 특별한 임무는 이 운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지방(본당, 공소, 기관)센터를 협조하고 후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1) 이 운동의 여러 분야 즉 신학, 사목, 교육, 의학, 사회학, 재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2) 각 지방센터의 자문에 응하고 연구자료를 준비하며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

(3) 각 지방센터의 활동, 즉 전 1항에서 언급한 여러 분야의 활동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4) 전국 협의회와 지방센터간의 중계역할을 한다.

제17조 교구위원회는 지방센터나 지방센터의 활동에 대한 관할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8조 교구위원회는 년 4차의 회의를 갖는다.

전국협의회

제19조 이 운동의 전국 협의회 구성위원은 다음과 같다.

- (1) 주교회의가 선출한 총재주교
- (2) 각 교구 위원회 지도신부
- (3) " 사무국장
- (4) 전국 여자 수도자 연합회 대표 3명
- (5) 전국 가톨릭 여성 연합회 대표 3명
- (6) 가톨릭 병원 연합회 대표 3명

제20조 전국 협의회가 담당할 임무는 이 운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각 교구위원회와 각 지방센터를 관할권 없이 후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1) 이 운동의 여러분야 즉 신학, 교리교육, 사목, 일반교육, 의학, 사회학, 재정 및 섭외에 관하여 연구하고

(2) 각 교구 위원회를 위해 자문에 응하고 연구자료를 준비하며 연수를 맡으며,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

(3) 각 교구 위원회의 활동, 즉 전 1항에서 언급한 여러분야의 활동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4) 정부와 국내의 관계있는 사회기관과의 연락업무를 맡는다.

제21조 전국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총재주교
- (2) 회장, 부회장 각 1명—총회선출

(3) 다음의 각 분과위원장—총회선출

- 가. 신학, 사목 분과위원회
- 나. 의학, 사회 //
- 다. 재정, 섭의 //

(4) 사무처장 겸 재무—임원회 선출

제22조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표결로 하되 1차, 2차에 한하고 3차의 결선 투표는 단순 다수결로 한다.

그리고 선임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 전국 협의회 총회는 년 1회 매년 8월마지막 주간에 개최하고 제21조의 임원회는 년 4회 개최하되 회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24조 전국 협의회 일반 업무는 총재와 회장의 감독 지휘하에 사무처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25조 사무처장은 임원회 결정에 따라 전임유급으로 하고 사무실과 보조자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직원은 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한다.

제26조 사무처장은 매년 지난 해의 사업보고서와 재무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처장은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총재로 하여금 주교회 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규약은 1975년 5월 28일 창립 총회에서 승인되고 1975년 6월 26일 한국 주교회의에 의하여 인준되었으므로 인준된 날로부터 2년 기한부의 실행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실행기간이 종료되면 재검토 될 것이나 필요하다면 전국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여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재검토 된 규약은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玉稿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月報, 會誌를 알차고 더욱 훌륭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두 執筆者가 됩시다. 수시로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掲載된 原稿에 대하여는 所定の 稿料를 드립니다.

1. 病院紹介——본 月報 「회원병원순례」에 아직 掲載되지 않은 病醫院 (病院沿革, 施設, 醫療要員 및 醫療活動 기타 등)…(원고지 8매 內外)
2. 會員動靜——病院內行事, 人事移動, 施設擴張, 實績 기타 여러가지 消息이 있을 때마다…(2~16매 內外)
3. 나의提言——建設的인 內容의 提言이면 무엇이든…(3~8매)
4. 詩, 隨筆, 公啓, 鬪病記, 紀行文, 實習記, 美談, 黑白寫眞作品
5. 其他 會誌에 掲載하여 會員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內容…(2~16매)

보내실 곳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월보, 회지편집담당자 앞
 100 서울 중구 저동 1가 2
 가톨릭산재병원 411호실

발행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1가 2번지
 가톨릭의대 부속 산재병원 411호
 전화 (26) 1046(교) 34

Published by The Korean
 Catholic Hospital Association
 발행인 : 김창렬 (Rev. Paul T.R. Kim)
 편집인 : 조규상 (Dr. Francis Cho)